
이사회 규정

아 이 에 스 동 서 주 식 회 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구 성	4
제 3 장 회 의	4
부 칙	11

이사회규정

1998. 5. 13. 제정

1999. 5. 6. 개정

2021. 5. 1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

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회장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을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회장 또는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이사회회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10시 당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 8 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는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상법상의 의결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
4. 준비금의 자본전입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8. 신주의 발행 및 감사
9. 회사채의 발행
10.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발행
11. 이사의 경업 및 이사 외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②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1.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예산, 결산
4.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에 관한 사항
5. 주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6.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7. 해외증권의 발행

- ③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에서 보고할 것을 요구한 사항
②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2 조 (긴급집행)

-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 13 조 (위임)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소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 제40조의2에 의거 이사회내의 기구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 소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주제별로 심의하여 의결한다. 이사회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변경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신설)

제 14 조 (이사회 내 위원회)(신설)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ESG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제 15 조 (자문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6 조 (경영진)

① 정관 제38조4에 의거 회사는 이사회 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②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영진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로 구분하며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및 경영진 중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라 칭하고 경영진은 이사회 의 이사가 될 수 있다.

-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정한다.
- ⑤ 각 경영진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⑥ 경영진의 급여,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약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 20 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 원활한 운영과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

이사회 규정 제13조 (위임)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다.

1. 정기주주총회의 일정, 장소 등 통상적 업무
2.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등기사항
3. 통상적인 일반예산 및 월 결산
4. 어음할인,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
5. 부동산 및 예적금의 담보제공
6. 유가증권의 매입 및 매각 (CD, 개발신탁증권 등)
7. 자기자본 2.5% 미만의 타법인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및 해외직접투자
8. 자기자본 2.5%미만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
9. 자기자본 5% 미만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공장의 신설 및 중·단기 자금의 차입
10. 자산총액 2.5% 미만의 자산취득 및 처분
11.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
12.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승인된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관련한 사항
13. 관련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14.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의 승인 (자사주 FUND포함)
15.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16.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17.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18.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19. 조직, 인사, 노무에 관한 중요사항
20. 사업계획, 사업구조조정 추진
21.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추진
22. 기술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
23.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24. 증여 및 기부금 제공
25.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26.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
27.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